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2008. 7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2008. 7

류 건 식 · 김 동 겹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 연구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목 차

I . 검토배경	1
II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특징	2
1. 도입방식 및 도입절차	2
2.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3
3. 국내기준과 국제기준간의 특징 비교	4
III .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6
IV .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영향 및 대응과제	14
1. 도입영향	14
2. 대응과제	17
V . 결론	19
참고문헌	20
<별첨> 현행 퇴직연금 회계관련 제반 규정 비교	22

I. 검토배경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추세임

EU, 호주 등(캐나다는 2011예정) 약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했거나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상호합치작업 진행중

-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즉 상장회사(비상장 금융회사 포함)는 늦어도 2011년부터 자사의 재무제표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공시해야 함.

- 2011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2010년)도 재무제표를 비교공시해야 하므로 2011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기업도 2010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이루어짐.

- 이와 같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퇴직연금 회계처리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을 국제연금회계기준, 미국연금회계기준 등과 비교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회계기준, 퇴직연금 회계 관련 규정(근퇴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퇴직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특징

1. 도입방식 및 도입절차

- 현행 회계기준의 제·개정절차를 준용하여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에서 전면도입

특정시점부터 전면 도입하지 않고 현행방식과 같이 기준서별로 도입할 경우 모든 기준서가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기 전에는 전면도입으로 인정받기 곤란

<표 II -1> 국제회계 도입 방식의 국제비교

	도입방식	적용시기	담당기관	적용대상	연결/개인
미국	Equivalence	2009년 까지 합치작업진행	SEC	전체	연결중심
일본	Equivalence	합치작업진행	ASBJ	전체	연결중심
EU	Full Adoption	2005	EFRAG	상장기업	연결중심
호주	Full Adoption	2005	호주재무성	전체	연결중심
캐나다	Full Adoption & Equivalence	2006-2011	ACSB	공개기업	연결중심
중국	Convergence 추진	2007	CASC	-	-

주 :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은 Full Adoption, Equivalence, Comprehensive adoption 등임

완전수용(Full Adoption), 국제회계기준 의제(Equivalence), 대폭수용(Comprehensive adoption) 등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식 중 우리나라는 대폭수용방식을 채택

- Full Adoption : 국제회계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
- Equivalence : 상호합치작업을 추진하여 자국 회계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으로 인정 하는 방식(미일 등 강대국)

- Comprehensive adoption : 국제회계기준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법(일부내용은 제외)이나 완전수용으로 인정받지 못함(한국)

- 전면 도입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국제기준이 허용한 대안을 채택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등으로 분류체계화(가칭 K-IFRS)

2.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EU 등 선진외국의 예를 감안,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지배·종속회사 및 상장예정법인 포함)와 금융회사(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일부제외)로 함.

다만 비상장회사 중에서도 적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이후에는 변경불가

- 도입시기는 2009년부터 국제기준 적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을 허용(금융기관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금융기관포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허용을 통해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전면도입시 발생가능문제를 대비하고 원활한 정착을 유도

- 향후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나 현행 기업회계기준보다 간명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정하여 부담을 경감

<표 II -2>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기업	
1단계	2009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제외)	선택적용
2단계	2011년	-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관 및 연결대상회사 포함)	의무적용

3. 국내기준과 국제기준간의 특징 비교

- ☐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공시

현재 대부분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기말보고서만 차후 공시

- ☐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국내기준은 정보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취득원가 평가

- ☐ 국제회계기준은 거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은 법률·정책적 목적에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표 II -3>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특징비교

	국제기준	국내기준
공시체계	-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 서류를 연결제표기준으로 작성 공시	-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적으로 공시(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 사후적 연차보고만 공시)
자산, 부채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 : 취득원가로 평가
법률·정책적 목적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방법을 규정	- 일부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 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기타회계 처리	- 지배회사 소유지분을 제외 하여 지분법 적용범위 판단	- 지배회사 소유지분 포함 하여 지분법적용범위 판단
	- 영업권 비상각 (부의 영업권: 즉시환입)	- 영업권 상각 (부의 영업권: 일정기간환입)
	- 원가법 및 공정가치법에 의해 유형자산 평가	- 원가법에 의해 유형자산평가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퇴직급여 관련 부채 산정에 계속기준을 사용하며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국내기준보다 계산의 복잡성 등이 존재함.

<표 II -4> 국제기준 도입과 퇴직급여 회계 변화 비교

		국제기준	국내기준
퇴직부채 계산기준	DC	국내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 모두 비계속기준으로 동일	
	DB	계속기준 (보험수리적계산기법)	비계속기준 (청산기준)
계산의 복잡성		매우 복잡 (연금계리사 도움 필요)	단순 (회계담당자 혼자가능)
필요한 보험수리적가정		퇴직률(퇴직시기), 사망률, 향후 임금상승률, 할인율, 기대수익률	없음
비고		2010년까지 국제회계기준에 준한 재무제표 작성	

자료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미래에셋 연금뉴스, 2008. 6., P.2

Ⅲ.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¹⁾

□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 국제회계기준(IAS 19)은 발생주의적 관점의 회계원칙에 기초하여 예측급여 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을 연금부채평가방식으로 채택
 - 퇴직연금부채를 재무제표에 기표하는 방식은 부채의 현재가치에서 자산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후, 미인식된 과거근무채무 및 계리적 손익의 차이를 반영
 - * 예측급여 단위적립방식 : 퇴직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부채를 평가하고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도입 후 기간경과에 따라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나 현재급여단위적립방식(Current Unit Credit)에 비해 평준화되어 안정적인 적립이 가능
 - * 현재급여 단위적립방식 : 사용자입장에서 제도도입초기에는 적립부담이 적으나, 과거 누적근무기간 단위의 증가로 인해 시간경과에 따라 적립부담이 급격히 증가
- 미국 연금회계기준(SFAS)에서는 근무원가의 측정을 위해 PBO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보완적으로 최소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PBO 대신 ABO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방법을 채택
 - 즉 연금자산의 공정가치가 ABO보다 작을 경우에는 미적립 ABO 만큼은 추가최소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추가부채인식과 측정시에만 ABO가 이용됨.

1) 국제회계기준(IAS), 미국회계기준(SFA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현행 한국 기업회계기준(K-GAAP)상에 나타나 있는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 내용 및 제반특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III -1> 연금부채²⁾ 평가 비교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연금부채 평가	PBO (PUC)	PBO (최소부채인식시에 ABO 적용)	PBO	ABO

○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에서는 예측급여채무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
- 반면에 K-GAAP(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서는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퇴직연금채무를 측정하므로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

□ 단기종업원 급여채무 인식

○ IAS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년미만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하여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

- 1년 미만 단기종업원 급여에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 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비화폐성 급여 등이 포함

2) 연금부채(채무)종류에는 가득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등에 있으며 예측급여단위적립방식(PUC: Projected Unit Credit) 등에 의해 연금부채를 산정하고 있음.

<표 III -2> 단기종업원 급여 채무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퇴직연금 채무인식	연금채무인식	IAS 준용	인식	미인식

- K-IFRS에서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급여채무를 인식하는 반면, K-GAAP에서는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미만 근속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수급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무를 미인식

□ 보험수리적 가정

○ 부채할인율의 적용

- IAS에서는 할인율 또는 이자율은 “연금지급의무와 상응한 유동성과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등급(AA이상)이 높은 회사채(high-quality corporate bond)”를 기준으로 설정

<표 III -3>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I)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계속기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 보험계리사결정 • 30년 재무성채권 4년 평균이율	- 회사채시장수익률 - 특수한경우: 국공채 시장수익률적용	일정한 기준없음

- SFAS에서는 현재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보험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30년 재무성채권의 4년 평균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IAS와 SFAS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는 IAS의 경우 양질의 회사채를 적용하는 반면 SFAS는 30년 재무성 채권의 4년 평균이율을 적

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IAS 및 SFAS의 연금 부채평가할인율과 달리, 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의 연금부채 평가할인율 기준은 <표Ⅲ-4>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즉, 영국은 IAS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독일은 3.5% 고정, 네덜란드는 AA- Swap, 일본은 20년 국채를 기준으로 부채할인율을 적용함

<표Ⅲ-4>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Ⅱ)

기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할인율	양질의 회사채	3.5%	AA- Swap	20년 국채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Series Protection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2007

- K-IFRS에서는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 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충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지급시기까지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 적용

○ 임금 및 급여 추정

- IAS 및 영국에서는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부채를 추정하고 있지만, SFAS는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표 III -5> 임금 및 급여의 추정(I)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임금 상승률	고려	미고려	IAS 준용	미고려

- K-IFRS에서는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을 하도록 규정
 - 즉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예: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를 고려하여 추정
-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향후 회계기간에 퇴직급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시 이러한 변경내용을 반영할 것을 규정
- IAS, SFAS, 우리나라 이외에 참고로 영국·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의 연금부채추정시의 임금상승 적용 여부를 보면 영국은 고려하고 있는 반면 독일·일본에서는 미고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암묵적으로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표III-6>참조).

<표 III -6> 임금 및 급여의 추정(II)

기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임금상승률	고려	미고려	암묵적 고려	미고려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Series Protection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2007

□ 보험수리적 손익

- IFRS 및 SFAS에서는 변동규모를 연금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 중에서 큰 쪽의 10% 범위까지는 줄이도록 하는 상각방법, 즉 범위의 상각 또는 범위초과분 상각방법을 적용
- 다만 SFAS에서는 손익이 발생한 기간 직후부터 손익의 일정부분을 상

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IAS에서는 손익의 상각은 손익이 측정된 연도부터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K-IFRS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의 순누계액이 (1), (2)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
 - (1) 직전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 (2) 직전보고기간말 현재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 :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 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

<표 III -7> 보험수리적 손익 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인식방법	범위초과분상각		범위한계법 (즉시인식가능)	미적용
	손익이 측정된 연도부터 상각	손익이 발생한 기간 직후부터 손익일정부분상각		

- 또한 기업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1) 모든 확정급여제도와 (2) 모든 보험수리적 손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 적립자산의 측정 기준

- SFAS는 연금자산의 측정을 공정가치(fair value)와 시장연동가치(market

related value)에 의해서 평가함.

- 다만 연금자산의 시장연동가치는 공정가액일 수도 있고 5년 평균 시장가치법과 같이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공정가액의 변화를 인식하는 계산가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표 III -8> 적립자산의 측정기준과 회계처리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적립자산 측정	할인현금흐름과 시가법 적용	공정가치 또는 시장연동가치 적용	공정가치	규정부재

- 또한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되지만,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 과거근무 원가 인식

- IAS에서는 연금제의 수정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근로자들의 예상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동일한 상각방법을 강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
- SFAS에서는 연금제도를 수정 또는 도입한 해에 과거근무원가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금급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근로자들의 미래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표 III-9> 과거근무원가 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인식방법	다양한 상각방법 인정	근무년수 상각법 (미래의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비용인식)	정액법에 의해 비용인식	미규정

- K-IFRS에서 과거근무원가는 관련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
-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

IV.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영향 및 대응과제

1. 도입영향

□ 부채중심 리스크관리체계로의 전환

-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 도입으로 인하여 잉여금의 변동성을 고려한 퇴직연금의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기존의 자산중심의 연금운용전략에서 자산 및 부채 모두를 고려한 부채중심의 연금운용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 자산중심의 연금운용전략은 자산자체의 수익과 변동성을 전제로 하여 투자가의 리스크 허용도에 대응하는 리스크-수익의 최적포지션을 구한다고 하는 사고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산중심의 연금운용전략은 적립비율 및 국제연금회계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함.

<표 IV-1> 국제연금회계기준 적용 전후 리스크 관리 특징

	국제연금회계 적용전	국제연금회계 적용후
연금운용 전략	- 자산중심 연금운용전략 • 연금자산중심 • 효율적 프론티어이론에 입각한 운용전략 (수익률과 위험간의 상관관계기초)	- 부채중심 연금운용전략 • 연금잉여금중심 • 금리리스크등과 같은 제반 리스크에따른 잉여금변동성을 고려하여 운용전략수립
리스크관리형태	- 연금 AM관리 • 자산운용의 기본원칙 등과 같은 운용규제에 입각 (연금부채개념은 완전배제)	- 연금 ALM관리 • 국제연금회계기준에 의한 부채확정과 이에 따른 자산운용 (시뮬레이션 ALM관리 등)
관리대상리스크	투자리스크	금리변동·인플레이션리스크

- 국제 연금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차원의 리스크관리가 보다 요구됨.
- 즉 국제연금회계기준 적용이후에는 연금제도의 잉여금(surplus) 보전이 기업이익의 안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변동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과 같은 부채측면의 리스크관리가 필요됨.
- 그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채무의 경우 금리의 하락(상승)에 따라, 또는 인플레이션의 상승(하락)에 따라 가치가 증대(감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퇴직연금 상품 선호도의 변화

- 국제연금회계 기준 도입으로 연금부채의 평가가 예측급여 단위적립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부 기업은 잠재적 연금부채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정도는 기업의 리스크 버퍼능력, 즉 기업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표 IV-2> 퇴직급여추계액과 PBO 관계 비교

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급여추계액(A)	PBO(B)	(B)/(A)
5%	3%	30,000천 원	25,610천 원	85.4%
	4%		27,608천 원	92.3%
	5%		30,000천 원	100.0%
	6%		32,631천 원	108.8%
	7%		35,593천 원	118.6%

주 : 1) 35세, 근속연수 10년, 평균임금 300만원기준

2) 할인율 < 임금상승률인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 PBO

- <표IV-2>는 할인율이 5%로 고정되어 있을 때 임금상승률의 정도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과 PBO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IV-3>은

OECD 주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기준(계속기준) 할인율과 감독기준(비계속기준) 할인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대체로 회계기준 할인율보다 감독기준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감독기준 할인율 적용시 계상되어야 할 연금부채 규모는 훨씬 증대되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됨
-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하되, 근로자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는 추세임

<표 IV-3> OECD 주요국의 감독 및 회계기준 부채할인율 비교

	감독기준 할인율	회계기준 할인율
벨기에	6	4.87
캐나다	4.5	5.98
독일	2.75 - 4	4.91
아일랜드	4.6 - 7.25	4.82
일본	1.0 - 1.6	2.07
네덜란드	4	4.94
포르투갈	4.5	5.12
스페인	4.0	4.87
영국	4.0	5.41
미국	4.7	5.83

자료 : OECD, Private Pension Series Protection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2007

- 결국, 국제연금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일부 기업은 잠재적 연금부채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 상품보다 연금부채계상의 회피차원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상품, 즉 DC형 퇴직연금상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할인율의 저하로 인해 매년 퇴직급부 채무가 증가하여 각 기업은 심각한 적립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즉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저금리기조가 견지되면 일부기업은 퇴직급부채

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DC형 제도로의 전환 또는 신규가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증대함

□ 퇴직연금상품의 다양성 확대

- 근로자와 기업은 국제연금회계기준의 도입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단순히 DB형, DC형, IRA형 퇴직연금상품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한 상품선택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 즉 퇴직금부채무의 축소, 금리인하에 의한 채무변동리스크를 적절하게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퇴직연금상품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Cash Balance Plan 등처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성격을 혼합함으로써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감소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미국처럼 퇴직연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것임.
- Cash Balance Plan은 장래예측에 의한 형태가 아니라 매년 각출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DC형태를 띤 DB형 제도이며 PBO부담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회계 대응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대응과제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국가의 퇴직연금시장 변화 등을 검토하여 국제연금회계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책마련이 요구됨.
-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가시화, ALM적 자산운용체계 구축, 퇴직금부지급수준의 인하, CB형 퇴직연금상품의 도입 니즈증대, 연금자산의 적립강화 등을 통해 국제연금회계기준 도입에 대응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자산 능력, 연금계리 및 컨설팅능력, 연금운용 전문인력의 확보, 연금ALM시스템의 차별화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부채평가방식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자산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에서 부채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으로 전환하여 국제연금회계기준의 도입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즉 연금자산 포트폴리오의 채구축 등을 단기수익률중심에서 충실 및 주의의무에 기초한 질적중심의 운용체계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함.

- 둘째,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 연금비용의 계상, 퇴직연금 계산기초율의 공시, 연금수리적 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 및 컨설팅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연금계산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의 추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 연금계리적 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함.
 - 또한 기업의 리스크 버퍼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제도 설계를 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컨설팅능력의 제고가 중요함.

- 셋째, 장기 운용자산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충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금리인하에 의한 채무변동리스크를 적절히 억제하면서 연금자산의 운용 강화가 요구됨.

- 넷째,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형태별에 따른 연금ALM시스템의 차별화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즉 맞춤형 연금 ALM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다 견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V. 결론

- 국제연금 회계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금부채와 연금비용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부채중심 연금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연금 회계기준의 도입은 연금자산 규제의 완화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적립률(Funding Ratio)을 통한 총량규제(부채대비 자산부족위험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제 연금회계기준의 도입은 잠재적 연금부채의 증대를 가져와 기업의 연금운용부담이 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상품의 선호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국제연금회계기준의 적용은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수익률보다 장기상품의 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택하고, 퇴직연금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국제연금회계기준의 제반영향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사전에 국제연금회계기준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능력, 연금계리 및 컨설팅 능력, 연금운용 전문인력의 확보, 연금 ALM시스템의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이미 국제연금회계기준이 도입·적용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연금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재검토하는 자세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참고문헌

- 권승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비교해설」, Ernst & Young 한영, 2007.10.
- 김해식,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연구조사자료, 1999.6.
-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 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1999.3.
- 박규서, 「퇴직연금제도 회계 및 세제」, 노동부, 2006.11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생·손보업계 동 설명회」, 2007.10.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미래에셋 연금뉴스」, 2008.6.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전면도입로드맵 공청회자료」, 2006.11
- _____,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2007.11
- _____,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 2007.11
- _____,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2005.11
- 岩本 洋, 「確定醵出年金」, 東洋經濟新報社, 2007.5.
- ASB, FRS 17, *Retirement Benefits*, London: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0.
- Geoffrey Whittington, *Accounting Standards for Pension Cost, Pension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IASB, IAS 19, *Retirement Benefits*, Lond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2004.
- IASB, Amendment to IAS 19, *Employee Benefits-Actuarial Gain and Losses, Group Plans and Disclosures*(Dec.). Lond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2004b.
- Juan Yermo, *Reforming the Valuation and Funding of Pension Promises: Are Occupational Pensions Safer?*, Private Pension Series Protection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OECD, No. 8, 2007.

Sandra Blome, KaiFachinger, Dorothee Franzen, Gerhard Scheuenstuhl, and
Juan Yermo,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sation Exercise*, Private Pension Series
Protection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OECD, No. 8, 2007.

<별첨> 현행 퇴직연금 회계 관련 제반 규정 비교

1. 기업회계기준³⁾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

○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회계처리

-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
-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

○ 종업원 퇴사한 후의 회계처리

- 즉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을 계상함.
- 예상퇴직연금 합계액은 퇴직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함
-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뀔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

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2005. 11. 29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의 채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의 퇴직연금 채무산정 방식과 동일함.

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함

-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 대체는 하지 않지만, 다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연금합계액과 부담금을 주석으로 공시함.

<표 1>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비교

	IAS 19	퇴직급여보장법 및 적용의견서
DC형	당해 기간중 제공한 근로용역으로 인한 기여금해당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IAS와 유사
DB형	-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측정 • 이 경우 현재가치는 미래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률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퇴직시점의 예상 퇴직후 급여를 추정한 후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부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	-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인 경우에는 대차대조일 현재의 급여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 계상 •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전이므로 일시금으로 측정 -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 합계액(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 사용함)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함.

○ 즉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

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함.

<표 2>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회계처리

	회계 처리의 세부내용
퇴직금제도와 DB형 병존	- 각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 • 단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DB형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계약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함 -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처리 •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상용할 의도도 있을시 •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존재시
기존퇴직금제도에서 DB형 또는 DC형으로의 변경	-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로 회계처리 - DC형이 장래근무기간에 대해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 -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DB형으로 변경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 추가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

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2005.11., PP.4~5에 의해 작성

- 특히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표2>와 같음.
-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측급여채무와 퇴직금 추계액중에서 큰 금액의 6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
- 예측급여방식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와 과거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공제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을 사용함
-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 연금채무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기초율은 규약에서 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
-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기준이율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기준이율 $\times$ 1%로 하여 단체별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담금산출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 기준이율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과 3년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하도록 규정

- 사망률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율을 적용하고, 퇴직률, 임금상승률 등은 300인 이상 단체는 그 단체의 경험율, 300인미만 단체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경험율로 사용

3.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규정
- 따라서 법인세법상 퇴직연금채무는 퇴직금 추계액이며 과도한 손금산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아직도 법인세법에서 장부상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비율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파산시에 퇴직금의 수급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저자약력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무연구실장)
(E-mail : keon@kiri.or.kr)

김동경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dgkim@kiri.or.kr)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31호)

발행일	2008년 7월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 6 8 - 4 4 0 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368-443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